

# 돼지콜레라 세부 방역조치

제공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www.nvrqs.go.kr)

## 1. 의심농장에 대한 임시 방역 조치

시군 및 가축위생시험소는 돼지콜레라 발생이 의심되는 농장에 대해서는 확진되기까지 다음의 임시 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8조 및 가축질병 병성감정실시 요령 제5, 6조).

1) 시·군 가축방역관은 돼지콜레라 의심농장에 대한 사육두수, 최초 발병일, 발병 두수, 구체적인 임상증상, 백신접종 상황 등을 조사

해야 한다.

2) 가축위생시험소는 아래 “가검물 의뢰” 방법에 의하여 가검물을 채취해야 한다.

3) 시·군에서는 가축위생시험소의 협조를 받아 발생상황과 시설 구조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이환 의심 돼지의 격리, 이동통제 및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발병농장에 대한 세부방역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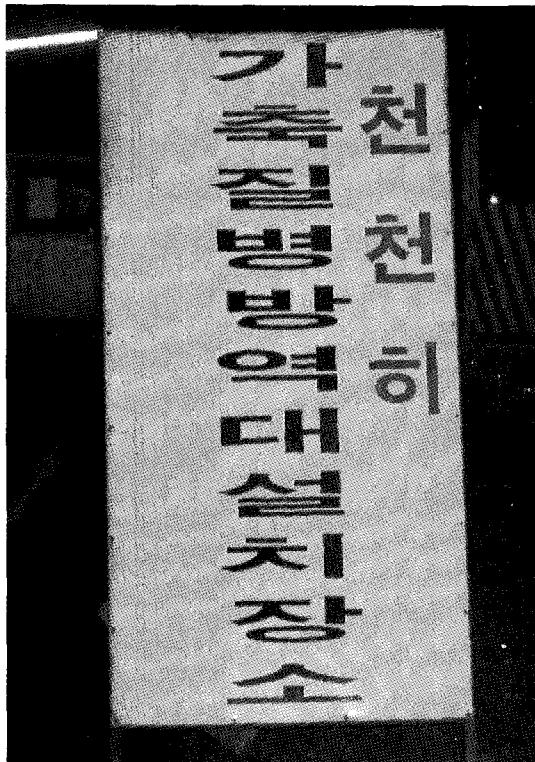
돼지콜레라가 발생하면 농림부, 검역원, 지자체(시·도, 시·군), 가축위생시험소, 축주, 생산자 단체 등은 돼지콜레라를 신속히 박멸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비상방역단을 조직할 수 있다. 중앙 및 지방 정부에서는 긴급방역을 위하여 방역기간 동안 타 지역의 방역요원들을 일시적으로 지원 또는 동원할 수 있으며, 긴급 방역비를 책정, 지원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돼지콜레라가 발병시 근절사업

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임무와 역할을 별첨 “돼지콜레라 근절사업 역할분담”을 참고로 한다.

### 가.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로 오염된 농장에 대한 조치

- 시장, 군수는 농장주에게 돼지콜레라의 발생사실을 알려주고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돈군들은 건강한 돈군



과 즉시 격리조치를 취하고 아울러 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농장의 돼지를 살처분하여야 한다.

- 살처분 범위와 기준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금지지역의 경우에는 동질병이 발생한 농장의 사육전두수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검역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격리개시 시기에 살아있는 돼지의 수와 종류를 기록한다. 지자체는 즉시 보상이 필요한 돼지와 기타 물건들을 평가하기 위하여 소유주와 협의하도록 하고 모든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살처분 시기와 기간을 결정한다. 살처분 후에 청소 및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개 곤충을 구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돼지와 함께 사육하고 있는 동물들도 격

리 검역하도록 한다. 예방접종 지역의 살처분되지 아니한 돼지를 다른 돈사나 농장으로 이동하면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돼지콜레라 종식통보 때까지는 이동을 통제한다.

#### 나. 농장 검역(격리)

돼지콜레라 발생이 확인되었을 때 농장의 건물도 검역해야 한다. 질병이 확인된 날짜로부터 질병이 종식될 때까지 검역조건 및 소독과 오염제거, 검사 등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즉 감염농장은 아래에 언급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감염된 돈사들의 오염제거 확인을 위한 일상적인 검역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돈사 내의 감염 돼지를 살처분하여 제거한 후 발병 돈군 유래의 모든 사체와 산물,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물품들은 완전히 소독 또는 소각을 실시한다.

- 발병농장 및 발병 돈사는 최소 40일 이상 반복하여 철저히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다.

- 이상의 조치로 농장 및 돈사에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제거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돼지콜레라 항체음성 자돈을 검역 돈사에 입식한 후 최소 40일 이상 사육하면서 재감염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 다. 양돈장 또는 돈사의 안전조치

돈군교체, 도태, 보상 평가, 소독 등에 필요한 기간 동안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오염된 돈사는 매일 24시간 안전조치를 유지해야 한다. 이 병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

## ※ 돼지콜레라의 접촉유형과 대책

접촉 유형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료와 공급품의 배달, 표본채취</li> <li>• 돼지콜레라 감염의심 농장의 건물 내 출입</li> <li>• 돼지콜레라 감염 돼지가 있는 시설과의 직접 접촉</li> <li>• 돼지콜레라 조사활동, 실험실 검사를 위한 재료의 채취</li> <li>• 감염 또는 노출된 돼지, 폐사체, 돼지 부산물, 오염된 물건 또는 시설과의 직·간접 접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욕 후 세탁된 옷을 갈아입는다.</li> <li>• 오염된 의복을 소독한 후 목욕하고 세탁된 옷으로 갈아입는다(1일간 출입금지)</li> <li>• 오염지역을 벗어날 때는 모든 옷을 세탁 또는 드라이 크리닝 함(3일간 출입금지)</li> </ul>

다면 상황에 따라 시장, 군수는 다음 절차를 수령해서 실시할 수 있다.

- 모든 출입구는 폐쇄 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출입구에는 돼지코렐라 발생사실 및 검역중임을 알리는 경고문을 부착하고 방역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농장 또는 돈사 출입자는 방역조치에 필수적인 사람에 한해서 허용하도록 주의한다.

돈사 또는 출구에 기구, 장비, 차량 등의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비치해야 한다.

- 질병 방제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장입구 또는 돈사 출입구에 감시요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감시요원은 적절한 방호복을 입은 인가된 사람만을 농장 또는 돈사에 출입하도록 해야 하며, 농장 또는 돈사를 떠나는 사람이 완전히 오염제거 조치를 했을 때 나가도록 허용한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담당 감시요원과 협의하여 감염돈사에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한다.

- 감시요원은 오염된 농장이나 돈사로부터 모든 오염 가능한 동물 또는 물건들이 반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감시요원은 오염방지 조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이를 보고하고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 돈사에서 배출하는 폐수에 의하여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일시적인 웅덩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감염돈사는 외부뿐만 아니라 돈군 제거기간 동안 오염된 통로나 도로를 허용된 소독제(생석회 등)로 소독하도록 한다.

- 축주는 비감수성 동물(개, 고양이 등)이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돈사 주위에 이들 동물이 배회하지 못하게 농장의 검역이 종료될 때까지 이러한 동물을 가두어 두어야 한다.

### 라. 돼지콜레라의 확산 방지

1)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돼지와 접촉 후에는 다른 돼지와의 접촉을 피할 것

- 돼지콜레라는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잠복감염된 돼지를 도입하므로써 흔히 이 병이 확산된다. 또한 병원체는 차량, 장비, 퇴비, 깔짚, 곤충 등에 부착되어 기계적으로 전파·확산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감염돈사에 출입한 사람의 의복이나 신발에 의해서도 확산될 수 있다.

박멸조치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감염돈사를 방문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며, 감염돈사를 떠나는 사람에 대한 오염제거 절차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 돼지콜레라 추적 조사팀은 발생농장 방문 후 농가 추적을 위해 매 농가 방문시마다 반드시 오염을 제거하는 절차를 밟는다.

### 2) 개인적인 오염 방지

- 돼지콜레라가 의심되거나 오염된 시설에 출입할 때는 보호의복(Protective clothing)을 착용해야 한다.

### 3) 오염지역 및 경계지역의 검역조치

-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양돈장을 관할하는 도자는 당해 양돈장을 중심으로 오염지역 및 경계지역을 정한 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질병이 최종 발생 한 날부터 돼지의 이동을 제한하여야 한다. 오염지역은 발생농장에서 최소한 반경 3km를 포함시켜야 하며, 경계지역은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부터 10km 이내로 하며 발생지역의 지리적 여건, 계절적인 요인, 역학적 특성 등에 따라 오염지역 및 경계지역의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 만약 돼지콜레라의 확산이 진행된다면 오염지역 및 경계지역도 확장되어야 하며, 일부 지역들이 돼지콜레라 청정지역으로 확인되면 오염지역 및 경계지역을 점차 축소할 수 있다. 오염지역 및 경계지역은 지도에 표시하되 그 지역에 관계된 정보는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오염지역의 구분을 도로로 정하였을 때는

도로에 경계표시를 하도록 한다.

- 돼지콜레라 발생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오염지역내의 모든 돈군들은 가능한 한 빨리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오염지역 내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엄격한 방역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 4) 오염지역 및 경계지역의 검역해제

- 돼지콜레라 확산 위험이 제거되고, 시장, 군수에 의해서 질병 종식에 따른 해제가 인가될 때까지는 검역은 계속되어야 하며, 그 지역에서 마지막 검역농장이 검역에서 해제될 때까지 지역검역을 해제할 수 없다.



### 5) 돼지와 돼지 부산물의 이동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돼지 또는 돼지 부산물, 즉 거름, 깔짚, 다른 폐기물 등이 어떠한 목적으로도 검역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농장에서 외부로 이동할 수 없다.

- 전체 돈군의 임상검사 결과 가축위생시험소장이 건강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서식1에 따라 허가서를 첨부하여 도축장으로 이동을 허용하며 각 개체는 이표를 달거나 어깨에 적색 표시 또는 문신을 해야 한다.

- 돼지 이동에 사용한 차량은 청소 및 철저히 소독을 실시한 후 사용한다.

- 이동 차량은 이동시에 봉인하거나, 차량에 가축방역 담당자가 동승해야 한다. 봉인은 도착지 도축장의 축산물 검사원 및 동승한 가축방역 담당자만이 해체할 수 있다. 양돈